5. 道 建設綜合計劃 樹立指針

資料提供 : 建設部

○ 정부는 금년말에 확정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도에서 도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3차 국토계획기간중('92~2001) 시행토록 하였다.

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앞으로 실시될 각종 선거유세시 남발될 선거공약 등으로 지역개발 욕구가 폭증하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균형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가적 목표와 지방이익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발전을 촉진시키고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근간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건설종합계획을 정착시키는데 있다.

○ 도계획이 제3차국토계획·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그 작업과정이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도계획의 수립기준, 주요내용 구성, 작성방법과 고려사항,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조직체 구성 등 도계획수립의 방법·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건설종합계획 수립지침을 각 직할시와 도에 시달하였다.

○ 금회 도계획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를 계획권역의 기본으로 하되, 직할시와 인접되어 있는 도의 경우에는 직할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 각도의 특성에 부합되고 그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주요지표 설정시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 지역주민의 희망과 합의에 입각하여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정에 설문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및 각종 간담회 운영 등 지역주민 의사반영체계를 포함하였다.
- 또한, 실천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지방정부의 세수전망과 기타수입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특히 계획기간('92~2001)의 상반기 5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4차년도에 후반기 5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 동 수립지침을 기초로 하여 각 직할시·도에서는 공청회 개최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92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